

유엔인권해설집  
진정 절차



## Contents

서문 .....	7
1부: 국제인권조약 산하의 진정 절차들 .....	9
개요 .....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진정 절차 .....	22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방지에 관한 협약 진정 절차 .....	26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규약 진정 절차 .....	30
모든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진정 절차 .....	33
모든 이주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진정 절차 .....	37
2부: 유엔인권위원회 및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에 하는 진정 절차들 .....	40
유엔인권위원회 1503 절차 .....	40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 진정 절차 .....	47

## 주(註)

이 책자는 유엔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 제7권을 번역하였음을 밝힙니다.

부록 ..... 49

    진정서 양식 (인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 49

    진정 지침 (여성차별철폐위원회) ..... 55

## | 서문 |

모든 사람은 유엔에 인권문제를 진정할 수 있으며, 매년 전세계 수 천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유엔은 어떤 유형의 인권침해의 진정을 접수하고, 어떻게 처리하는가? 본 인권해설집은 유엔의 조치를 원하는 개인과 집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엔의 인권보호제도들을 설명한다.

인권이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개인들의 진정을 통해서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것인 것으로 보이는 국제 규범들이,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실제로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국제인권조약들에 담겨진 인권기준들이 한 인간의 실제 상황에 직접 적용될 때, 그러한 인권기준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된다. 그 결과로 축적되는 결정들은 국가, 비정부기구, 그리고 개인들이 관련 조문들이 당대에 가지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개인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된 것은 불과 최근의 일이다. 본 인권해설집은 국제인권조약들

에 직접 제출된 진정들과 유엔인권위원회와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의 진정 절차에 제출된 진정 사건들을 검토한다.<sup>1)</sup> 1970년대 초부터 국제 진정 절차들은 급속한 발전을 해왔으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소위 6개 핵심 인권조약들 중 4개 조약에 의거하여 자신의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유엔에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4개 조약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i)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ii) 고문과 그 밖의 잔혹한,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문과 학대 (iii)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다루고 있는 인종차별 행위 (iv)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차별 행위. 이 조약들은 각자 진정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준 사법적 위원회를 설립해 놓고 있다. 이 준 사법적 위원회들의 진정 절차들은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절차를 간소화 시켜 놓고 있다. 변호사가 아니라도, 또는 법률 및 전문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수월하게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편리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각 조약들의 진정 절차들은 유엔인권위원회 및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의 진정 절차에 의해 보완된다.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된 정치적 기구들인 이들 위원회의 진정 절차들은 유엔 체계 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진정 절차들이다. 이 두 절차들은 준 사법적 제도들을 통해 개인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국제조약들에 의거한 진정 절차들과는 다른 영역에 중점을 둔다. 이 두 위원회에 제출되는 진정들은 인권침

1) 유엔 사무국 산하 또는 세계노동기구 (<http://www.ilo.org/>) 와 유네스코 ([www.unesco.org](http://www.unesco.org)) 등, 보다 광범위한 유엔 체계 내에 많은 수의 진정 절차들이 있다.

해의 보다 조직적인 양상과 경향에 초점을 맞추며, 세계 모든 국가들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다. 조약 산하의 진정 절차들과 마찬가지로, 두 위원회의 진정 절차들도 법률적 및 전문적 용어와 절차를 되도록 피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의 이용이 허용된다. 본 인권해설집은 2개 부로 구성된다. 1부는 개별 조약 하의 진정 절차들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검토를 하며, 2부는 유엔인권위원회 및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의 진정 절차들에 주안점을 둔다. 독자들은 이들 제도들이 다양한 책무와 절차에 의거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제도 별로 다양한 장점과 단점들이 있다. 어떤 제도에 진정을 하는 것이 가장 내실 있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진정 절차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1부 : 국제인권조약 산하의 진정 절차

### 개요

1부에서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등의 4개 국제인권조약이 제공하는 진정 절차들을 설명한다. 인권조약은 회원국들이 조인한 공식문서로서, 이 문서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일반적으로 비준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인권과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할 구속력 있는 의무를 부과한다. 각 조약들의 전문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웹사이트 주소: <http://www.unhcr.ch/html/intlinst.htm>.<sup>2)</sup>

모든 사람은 조약이 설립한 전문가 기구에 해당 조약이 규정한 권리의 침해에 관한 진정을 하고, 준 사법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조약의 전문가 기구”가 각 조약의 회원국들이 선출한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들이다. 이 위원회들은 조약에서 규정한 권리들을 회원국들이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회원국들을 상대로 제출된 진정들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임무를 맡는다. 4개 진정 절차들 간에는 절차적인 차이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구조와 운영 면에서는 유사하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4개 조약 산하 진정 절차들의 전형적인 특징에 관해 전반적으로 설명한다. 그 다음에는 조약별로 전반적인 기준과 각각 다른 부분들에 관한 설명이 제시되므로, 독자들은 각 조약들의 특성들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조약에 의한 진정은 누구를 상대로 제출할 수 있나?

4개 조약의 진정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들을 갖춘 국가들만을 상대로 제출할 수 있다. 첫째, 진정을 제출하는 조약의 회원국이어야 한다. 즉, 해당조약을 비준했거나 다른 방식으로 승인한 국가여야 한다. (한 국가가 그 조약의 회원국인지를 확인하려면 OHCHR 웹사이트의 조약기구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할 것.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려면 홈페이지의 Documents를 클릭한 다음 Treaty body database, Ratifications and reservations와 States parties를 클릭해서 해당 국가를 확인한다. 또는, 조약에 따라서는 본 인권해설집 마지막 부분

2) OHCHR 웹사이트에 접속하는데 예로가 있거나, 웹사이트가 수정된 경우에는 조약기구들의 사무국에 문의하기 바란다 (주소는 각 항목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어 있음).

에 제공된 연락처들을 통해 Petition Team 또는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에 연락할 수도 있다.)

둘째, 그 회원국이 해당 조약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의 진정심사 권한을 인정한 국가였어야 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경우, 회원국은 별도의 조약에 가입을 함으로써 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즉,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1선택의정서 또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선택의정서에 가입을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정심사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다 (의정서의 조문을 열람하려면, 또는 특정 국가가 이들 의정서의 가입국인지를 확인하려면, 위에서 설명한 순서대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웹 사이트를 참고할 것).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과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경우에는, 협약의 특정 조문들, 즉 각각 22조와 14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그러한 권한을 인정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위원회의 진정심사 권한을 인정한다. (한 국가가 이러한 선언들을 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위에서 설명한대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해당 국가를 선택한 다음, Declarations on procedural articles를 클릭할 것.)

누가 진정을 제출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이 해당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상기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춘 국가를 상대로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법률적 조언을 받아서 진정서를 작성하면 더 바람직하겠지만, 변호사가 없어도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 절차 하에서는 법

물적 지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당사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3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을 대리하여 부모가 진정을 제출하거나, 정식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리하여 보호자들이 진정을 제출하는 경우, 또는 외부세계와 차단된 채 수감생활을 하는 사람을 대리하여 진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가 정식 동의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진정서에는 어떠한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가?

위원회에 제출하는 신고서, 또는 진술서, 또는 진정서라고 불리는 문서는 어떤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인권해설집(부록1, 2)에 첨부된 진정서 표준 양식<sup>3)</sup>과 지침<sup>4)</sup>들은 특정 정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제공하는 문서이면 족하다. 진정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서명이 있어야 한다.<sup>5)</sup> 제출자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진정의 대상이 되는 국가를 지정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진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당사자가 동의했다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그러한 동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진정의 근거가 되는 모든 사실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해야

- 3) 시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하의 진정.
- 4) 모든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의거한 진정들.
- 5)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서는 이메일로 제출될 수 없다. 그러나 이메일을 통해 위원회 사무국에 비공식적인 접촉을 할 수는 있다 (본 인권해설집 마지막 부분의 연락처 참조)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진술이 최대한 완벽해야 한다는 점과 진정서에 해당 사건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기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 당사국에서 제공되는 모든 구제절차들을 시도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즉, 당사국의 법원과 관계당국으로부터 구제를 받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상술해야 한다. 또, 다른 국제적인 조사 기관이나 구제 기구에 진정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술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는 아래에 설명할 사건의 인정가능성이라는 표제의 항목을 참조할 것. 마지막으로, 자신이 진술한 사실들이 해당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위반된 조항을 지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신의 주장과 관련되는 모든 문서들, 특히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당사국의 행정 결정 또는 사법부 결정에 관한 모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의 관계 법령의 사본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러한 문서들이 위원회 사무국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번역을 의뢰해 놓으면 (전문 또는 요약) 진정의 심사절차가 보다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다.

진정서에 필수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무국이 추가 정보 요청을 위해 제출자에게 연락한다.

인권 조약에 의거한 진정의 제출 시한

일반적으로는 관련 조약들에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을 제출하는 공식적인 시한은 없다. 그러나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으면 즉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진정서 제출이 늦어지면 당사국이 적절

한 대응을 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예외적인 경우지만,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후에 진정을 하면, 해당 위원회가 그러한 진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

절차

진정서에 상기한 필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진정은 접수된다. 다시 말해, 정식으로 해당 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제출자에게는 등록에 관한 상담이 제공된다.

접수가 되면, 문제의 사건은 당사국에게 해명 기회를 주기위해 당사국에 통보된다. 당사국은 주어진 시한 내에 진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모든 사건은 공통적으로 심리적격 심사와 본안(merits)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안이란 해당위원회가 심사하기 전 충족해야 하는 정식요건을 말한다. 진정의 본안이란 조약이 정한 권리가 실제로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사건의 실질적 내용을 말한다. 이 단계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당사국이 진정서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야 하는 시한은 진정 절차들에 따라 서로 다르며, 구체적인 사항은 진정 절차들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아래의 항목에서 설명하고 있다.

일단 당사국이 진정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면, 제출자에게 진술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준다. 그 시한도 진정 절차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참조). 이 시점이 되면, 위원회가 결정을 내릴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당사국이 진정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진정 제출자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이 경우 당사국에 독촉장을 보내는데, 그래도 진술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제출

자의 본래 진정서를 기초로 결정을 내린다.

긴급한 또는 민감한 특수상황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들은 사건을 일반 절차에 따라 심사하기 전에 비상조치를 취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러한 잠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은 각 진정 절차에 관한 항목에서 설명된다. 모든 진정 절차들에 공통적인 사항은 해당 위원회가 사건을 심사하기 전 어떠한 단계에서도 당사국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보통 돌이킬 수 없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형선고의 집행 또는 고문의 위험에 직면한 사람을 송환하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위원회의 잠정조치 요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장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경우이든, 왜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한 이유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밝혀야 한다.

사적인 또는 개인적인 민감한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에 최종 결정문에서 신원을 노출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진정의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 또는 그 밖의 문제들을 밝히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심리적격

진정을 제출 받은 위원회는 진정서가 공식적인 심리적격 요건들을 충족시킬 때에만 사건의 본안을 심사한다. 심리적격을 심사할 때, 위

위원회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진정을 제출하는 경우, 제출자가 진정을 제출할 권한을 정당하게 위임 받았는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제출자 (또는 당사자)가 인권침해의 피해자인가? 이미 권리를 침해했거나 현재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회원국의 법률, 정책, 관행,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서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문제의 법률, 국가정책, 또는 관행의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고, 단순히 법률, 국가정책, 또는 관행의 정당성에 추상적으로 도전(민중소송(action popularis)이라고 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심리적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진정이 조약의 조항들에 합당한 것인가? 해당 인권 침해 주장은 조약이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인권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에 진정을 제기했다면, 재산권의 침해는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규약은 재산권을 보호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해당 진정은 법률용어로 인정 불가능한 사항적 관할권(inadmissible *ratione materiae*)이 된다.

진정이 충분한 실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해당 위원회가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제출 받은 정보를 기초로 비추어 볼 때, 진정 또는 주장이 충분한 사실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심리적격을 위한 실체적 증거의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할 수 있다. 이는 다른 국제 또는 국내 법원들이 명백하게 근거 없

는 사건을 기각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당사국이 진정 절차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관한 진정인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당사국이 진정 절차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진정은 법률용어로 인정 불가능한 시적 관할권(inadmissible *ratione temporis*)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예외는 있다. 진정 대상인 사건의 효과가 진정 절차가 발효된 시점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사건의 전모를 조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진정 절차들에 관한 항목에서 참조하기 바람.

모든 국내 구제절차들을 시도해 보았는가? 진정의 심리적격에 관한 기본 원칙은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기 전에 자국의 구제 조치들이 모두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내 사법 부에의 제소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이 요건을 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에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예외가 있다. 국내 구제절차가 불합리하게 지연되거나, 그 효과성이 없음이 명백( 예를 들면, 당사국의 법률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하거나, 당사자가 진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예를 들면, 형사사건에서 법률적 조력이 거부되는 경우)에는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시도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적용해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내 구제절차의 시도에 대해서, 본래 진정서에 국내 구제절차들을 시도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들, 국가

기관에 제소한 사건 및 날짜(들), 그리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진정이 진정 절차의 남용은 아닌가?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위원회는 해당 진정건이 단순한 장난이거나 남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혹은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 불가능한 것으로 각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이미 기각된 사안을 위원회에 반복적으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진정이 다른 국제구제기구의 심사를 받고 있는가? 해당 사건에 관한 진정서가 이미 다른 조약기구 또는 범아메리카 인권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 또는 아프리카 인간 및 인민의 권리 위원회<sup>6)</sup> 등의 지역 인권기구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 4개 위원회는 국제 차원에서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해당 진정을 심사하지 않는다. 이는 진정서에 기록해야 할 심리적격에 관한 문제로, 국제구제기구에 제출한 모든 진정들과 진정을 제출한 기구, 날짜 및 결과를 진술해야 한다.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선언한 유보조항으로 인해 해당 진정이 심사에서 배제되어 있는가?<sup>7)</sup> 회원국이 특정 진정에 대한 조사권을 제한하는 유보조항을 달았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회원국들은 다른 국제기구에 의해 이미 심사를 받은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아주 드문 경우에, 위원회는 특정 유보조항을 허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

고, 그러한 취지의 유보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서를 심사할 수도 있다.

진정이 위에서 열거한 이유들로 인해서 인정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진정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반론을 제시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떤 사건이든 간에, 당사국은 위에서 열거한 이유들 중 한 가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진정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할 때, 인정 불가능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제출자는 당사국이 제출하는 진술서에 대한 반론을 할 때 자신의 입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사건의 본안

진정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면, 위원회는 사건의 본안을 심사하고, 조약의 위반행위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결정의 근거를 제시한다. 많은 회원국들이 자신이 이행할 인권 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실제적 유보조항을 선언해 놓고 있다.<sup>8)</sup> (회원국들이 선언한 모든 유보조항들의 텍스트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웹사이트의 조약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그 동안에 회원국이 관계 조항이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수용하기로 하는 등 유보조항이 이후에 철회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위원회는 유보조항에 해당하는 진정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부하며, 위에서 지적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보조항을 허용할 수 없는

6) 아프리카인권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하면, 아프리카인권재판소에 제출되는 진정에도 적용된다.  
7) 유보는 회원국이 조약의 특정 조항에 의거한 의무를 인정할 때, 그러한 의무를 제한하는 공식적 성명서이다.

8) 회원국은 특정조항에 대한 회원국의 이해를 단순히 기록하는 것에 불과한 선언을 할 수도 있다. 선언이 유보와 동일한 효과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행위의 공식 명칭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점이다.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한 취지의 유보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심사한다.

위원회가 해당 조약이 정하는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위원회의 이전 결정들, 각 조항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소위 일반 논평(General Comment), 그리고 회원국들이 정기적으로 해당 조약에 제출하는 보고서들에 관한 위원회의 소견 등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문서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웹사이트 Treaty Body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위원회들의 결정기록에 관해 수많은 학술기사들과 서적들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진정의 심사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에서 각 진정을 심사한다. 일부 위원회들의 진정 절차에는 구두 심문에 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sup>9)</sup>, 지금까지의 관행은 진정인과 회원국이 제출한 서면 정보를 기초로 심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로부터 구두의 진술을 받거나 오디오 또는 오디오-비디오 증거 (오디오 카세트 또는 비디오테이프)는 접수하지 않고 있다. 또, 독자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 이외의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다. 위원회는 제3자들의 진술은 심사에 고려하지 않는다(법정 조언자에 의한 의견서(amicus briefs)라고 불리기도 함).

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 결과가 진정서 제출

9) 고문방지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진정 절차에 관한 아래의 설명 참조.

자와 회원국에 동시에 통지된다. 위원회 위원 중 1인 이상의 위원의 의견이 다수 의견과 달랐을 경우나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지만 그 이유가 달랐던 경우에는 소수 의견을 밝히는 별도의 의견서를 첨부하기도 한다. 사건의 본안에 관한 최종 결정, 또는 심리적격에 관한 결정의 원문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웹 사이트에 위원회의 결정기록 부분에 게시되어 있다.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unhcr.ch/html/menu2/8/jurispr.htm>.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없으며, 일단 내려진 결정은 그것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후 진정이 어떻게 되는가는 결정의 성격에 달려있다.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약이 보장하는 권리의 침해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하면, 당사국에 시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진정 절차에 관한 항목들을 참조할 것.

위원회가 조약의 위반이 없었다고 결정하거나, 심리적격을 부인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제출자와 당사국에 통보하면 사건은 종결된다.

위원회가 진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세부적 주장이나 조항들과 관련해서, 인정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상기의 일반적 절차가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당사국에 지정된 시한 내에 사건의 본안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그 다음 제출자는 당

사국이 제출하는 진술서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기간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사건의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개별 진정 절차들에 관한 항목들을 참조 할 것.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진정 절차 서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생명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약이다. 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들은 규약의 3편 (6조부터 2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들의 위반행위에 대한 진정 절차는 규약의 제1선택의정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규약의 회원국들은 별개의 조약에 가입할 수 있다. 회원국들은 제1선택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본 규약이 보호하는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자국의 관할 내에 있는 자들의 진정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sup>10)</sup> 인권위원회는 18인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매년 3회 회의를 갖는다.

### 세부절차

다음은 위원회의 진정 절차들의 일반적 절차를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요건을 갖추어 선택의정서에 제출된 진정은 새로운 진

10) 인권위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해설집 시리즈 인권해설집 15를 참조할 것.

정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전달된다. 특별보고자는 사건을 접수하여 결정하여 해당사항을 지시한다.

선택의정서에 의거, 진정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진정의 심리적격과 본안을 심사하는데, 접수되는 사건의 수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를 위해 진정의 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6개월 이내에 사건의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술서가 주어진 기간 내에 제출되면, 진정인은 2개월 간의 반론 기간을 갖게 되며, 그 다음에는 위원회가 결정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지적한대로, 당사국이 진정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해도 진정인이 손해 볼 일은 없다. 이 경우, 당사국은 6개월의 시한이 지나면 두 차례의 독촉장을 받게 된다. 그래도 진술이 없으면, 위원회는 진정인이 제출한 정보를 근거로 심사를 한다. 한편, 당사국이 독촉장을 받고 나서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진술서가 진정인에게 전달되고, 진정인은 그에 대한 반론을 할 기회를 갖게 된다.

위원회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회원국들과 진정인들의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상적 절차와는 다른 절차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진정이 접수된 지 2개월 내에 회원국이 심리적격에 관한 진술서만을 제출하고, 위원회가 심리적격에 심각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면, 진정인에게 심리적격에 관한 진술서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하도록 한다. 그 다음 위원회는 심리적격에 대해서만 예비결정을 내리고, 진정이 인정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만 본안에 관한 심사에 들어간다. 이 경우, 당사국은 사건의 본안에 관한 진술서를 심리적격 결정이 내려진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되며, 진정인도 진술서 도착 후 2개월 이내에

반론을 제기 하도록 요청 받는다. 통상적 절차가 아닌 이러한 특별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통보된다.

선택의정서에 제기되는 사건의 수가 방대하기 때문에 진정서가 최초로 제출된 이후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 질 때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긴급한 특수상황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의) 인권위원회의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필요로 하는 긴급한 상황들에 관한 규정은 위원회 절차규칙의 규칙 86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한 경우, 새로운 진정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진정을 심사하기 전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사국에게 요청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선택의정서에 따른 회원국의 고유한 의무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는 선택의정서 위반으로 규정한다.

### 사건의 심리적격에 관한 유의사항

사건의 심리적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점을 좀더 언급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인권위원회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만 진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규칙에 예외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본 규약을 위반한 행위가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한 이후에도 지속되는 때, 예를 들면, 당사국이 가입일 이전에 실종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가입일 이전의 불공정한 재판으로 수감된 자가 계속 형기를 살고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

진정의 전모를 심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당사국이 선택의정서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진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 또는 그 밖의 국가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의정서 가입 이전에 내려진 경우에도, 위원회는 진정의 전모를 조사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믿는다는 점이다.

동일한 진정을 다른 국제기구와 동시에 조사하는 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1503 절차 (본 인권해설집에서 차후 설명됨)기구와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sup>4</sup>에게 제출한 진정은, 두 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메커니즘의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본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진정 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다고 해도, 인정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둘째, 위원회는 본 규약이 다른 국제규약보다 강력한 보호를 제공하는 사안 경우에는, 당사자가 본 규약의 보다 강력한 보호를 요청하면, 다른 국제기구에 이미 제출한 사건을 다시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위원회는 다른 국제기구들이 절차적인 이유로 거부한 진정 사건들은 실제적인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위원회의 결정 이후 - 일부 추가 사항

위원회가 회원국이 본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당사국은 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요청 받는다. 이러한 요건의 근거는 회원국은 모든 권리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보장해

야 한다는 2조 3항 규약이다. 당사국의 진술서는 진정인에게 전달되며, 진정인은 진술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갖게 된다. 위원회가 적절한 구체책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손해배상 또는 구금인의 석방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은 위원회 위원들 중 한 사람인 후속조치 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Follow-up of Views)에게 인계 되고, 특별보고관은 앞으로 취할 추가적 조치들을 검토한다. 예를 들면, 특별보고자는 당사국에게 구체적인 요청서를 발부하거나, 당사국 대표와 만나서 대책을 논의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는 예외적으로 기밀사항으로 분류되지 않는 한, 후속조치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특별보고관이 취한 조치와 함께 공표된다.

위원회가 진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세부적인 주장 또는 조문을 언급하며, 인정 가능한 것으로 결정하면,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사건의 본안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토록 요청 받는다. 진술서가 도착하면, 진정인은 2개월 이내에 진술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사건의 심사에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 진정 절차

#### 서문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에

관한 협약은 1984년 12월 10일 채택되었다. 이 조약은 특히 회원국들에게 고문을 받을 것이라는 실제적인 근거가 있는 국가로 사람들을 송환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모든 곳에서 발생한 고문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와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 실제적 의무는 이 협약의 1부(Part)를 구성하는 1조부터 16조에 규정되어 있다. 협약에 의거한 권리의 침해에 대한 진정 절차는 22조에 규정되어 있다. 원하는 회원국들은 개인 또는 집단들이 협약이 규정하는 자신의 권리를 당사국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제출하면 1년에 2회 회의를 여는 고문방지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수 있다는 조항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선언을 한다.<sup>11)</sup>

#### 세부절차

진정이 등록되면, 위원회는 당사국에 진정의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진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요청한다. 당사국의 반응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과정 중 한 가지 과정을 밟게 된다.

- 당사국이 진정의 심리적격에 관한 진술서만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진정인은 진술서에 대해 4주 이내에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다. 그 다음, 위원회가 심리적격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진정이 인정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되면, 진정은 종료된다. 진정이 인정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면, 당사국은 4개월 안에 사건의 본안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정인은 본안에 관한 진술서가 도착하면 6주 내에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다

11) 고문방지위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해설집 시리즈의 인권해설집 17를 참조할 것.

음에 위원회가 사건의 실제성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 당사국이 심리적격과 본안(보통 6개월 이내)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면, 진정인은 6주 내에 진술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사건의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되는 사건의 수가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진정에 대한 최종 결정이 등록일 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심리적격에 관한 진정의 경우 결정기간은 좀더 단축된다.

### 긴급한 특수상황

위원회의 진정 절차 규칙 108(1)은 진정인이 사건이 심사되는 동안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문방지위원회의 잠정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요청은 송환이 임박하고 송환된 국가에서 진정인이 고문을 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규약 3조에 의거하여 제출된다. 새로운 진정과 잠정조치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New Complaints and Interim Measures)이 이 규칙에 의거하여 당사국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 심리적격에 관한 유의사항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은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심리적격 요건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해당 진정은 현재 다른 국제 조사 또는 조정 절차의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은 물론, 과거에 그러한 기구의 결정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상기에 해당하는 진정은 인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될 것이다. 더욱이, 위원회의 절차 규칙은 진정이 근거가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국내 구제절차들을 모두 시도한 이후 불합리하게 오랜 시일이 지난 다음에 제출되어 위원회 또는 당사국이 심사하기가 부당하게 어렵게 된 진정은 인정불가능 한 것으로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진정의 심사

고문방지위원회의 절차 규칙에 의거하여 위원회는 진정의 본안을 심사할 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해 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당사자 일방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평등한 절차적 보호의 원칙에 입각해서 출석할 권리가 있다.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심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고 예외적이란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또, 위원회는 유엔 기구들, 특수기관 또는 기타 정보제공처로부터 진정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입수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결정 이후 - 일부 추가사항

위원회는, 예를 들어 임박한 송환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당사국의 실제 행위나 예상되는 행위가 규약에 의거한 회원국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원국에 위원회의 소견(View)을 전달하고 90일 이내에 그에 대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이는 위원회의 절차규칙 112(5)에 의거한 것으로, 이 조항에 따르면, 회원국은 위원회

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후속조치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회원국이 제공하는 정보를 검토한 후,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한다.

진정의 심리적격이 승인되면, 당사국은 4개월 이내에 진정의 본안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국의 진술서가 제출되면, 진정인은 6주 내에 진술서에 관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다.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 진정 절차

#### 서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관한 국제협약은 1965년 12월 21일 채택되었으며, 회원국들에게 모든 사람이 인종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적 및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규정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인종차별 금지에 관한 포괄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지만, 이 협약은 인종차별 분야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전문 조약이다. 실질적 의무들은 협약의 1부를 구성하는 1조부터 7조에 규정되어 있다. 고문방지협약의 경우처럼, 이 협약도 협약에서 정한 권리의 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는 진정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다. 원하는 회원국들은 협약에서 정하는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개인 또는 집단들이 제출하는 진정을 인종차별 방지에 관한 위원회가 14조에 의거하여 심사할 권리를 갖는다는 선언을 한다. 이 위원회는 18인의 독립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매년 두 차례 회의를 갖는다.<sup>12)</sup>

12)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해설집 시리즈의 인권해설집 12를 참조할 것.

진정을 제출할 수 있는 자와 진정을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또는 고문방지에 관한 협약 하의 진정과는 달리, 이 협약 하에서는 개인 또는 개인을 대리하는 자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집단 또는 집단을 대리하는 자도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진정 제출 시 제공해야 할 세부 정보는 기본적으로 상기의 일반 원칙에서 설명한 것들과 동일하다.

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려면 국내 관계기관의 최종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기 바란다.

#### 세부절차

진정이 등록되면, 회원국은 진정의 심리적격에 관한 진술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심리적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안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당사국이 심리적격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면, 진정인은 6주 내에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위원회가 심리적격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가 진정을 인정가능한 것으로 결정하면, 당사국은 3개월 이내에 진정의 본안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안에 관한 진술서가 제출되면, 진정인은 6주 내에 반론을 제기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위원회가 진정의 본안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 당사국이 심리적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서만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진정인은 6주 내에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본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 위원회에 제출되는 진정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진정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통 1년 이내에 최종결정이 내려진다. 심리적격에 관한 결정만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욱 단축된다.

### 긴급한 특수상황

다른 진정 절차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진정이 심사되는 동안에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절차 규칙 91(3)에 의거하여 당사국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심리적격에 관한 유의사항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의 경우 심리적격 측면에서 상기의 일반 절차들과 다른 점이 2가지 있다. 첫째, 동일한 진정이 다른 국제진정 절차에 계류 중에 있거나, 다른 국제 진정 절차의 결정 대상이었다고 해도 인정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둘째, 이미 강조했던 것처럼, 6개월 시한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진정은 일반적으로 인정 불가능한 것으로 선언된다.

### 진정의 심사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진정 절차 규칙은 위원회가 진정의 본안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질문을 하기 위해 진정인 (또는 대

리인)와 당사국 대표를 심사과정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통상적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 위원회의 결정 이후 - 일부 추가 정보

위원회가 취하는 행동 절차는 고문방지위원회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위원회가 진정의 본안에 관한 결정 (소견(Opinion) 이라고 함)을 내릴 때, 협약의 위반행위를 정식으로 확인하지 못했을 때에도 "제안과/또는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안이나 권고는 일반적일 수도 있고 구체적일 수도 있으며, 당사국에 혹은 협약의 모든 회원국들에 전달된다. 위원회의 진정 절차 규칙 95(5)는 회원국은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한 정보에 관한 보고서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진정 절차

#### 서문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는 1979년 12월 18일 채택되었으며, 모든 여성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며, 그러한 권리의 법적 및 실질적 보호를 위해 회원국들이 준수하여 할 의무들을 규정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 금지에 관한 포괄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지만,

이 규약은 여성차별 분야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는 전문 조약이다. 이 규약에 의거하여 설립된 위원회는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전문지식도 보유하고 있다. 실질적 의무는 규약의 1편부터 4편까지 걸쳐 있는 1조부터 16조까지의 조항들에 규정되어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마찬가지로, 이 규약의 진정 절차는 1999년 10월 6일 채택된 선택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다. 이 선택의정서는 본 규약과 별개의 조약으로, 본 규약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가입할 권한을 준다. 회원국들은 선택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본 규약이 정한 권리를 침해 당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진정에 대한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한을 인정한다. 선택의정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수많은 혁신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진정을 제출할 수 있는 자, 진정 시 제출해야 할 정보 및 진정의 제출 시기는?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의 진정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개인들 또는 집단들을 대리하여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개인 또는 개인들을 대리하여 진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그들의 동의 없이 그들을 대신하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아직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를 대리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해석을 내놓지 않았지만, 다른 위원회들, 특히 인권위원회의 결정기록이 하나의 지침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제출해야 할 자료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한 절차들을 참조하기 바

란다. 본 인권해설집의 부록 2에 진정 지침들에 제시되어 있다.

진정서의 제출 시한은 없으나, 이미 지적한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진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 세부절차

이 위원회의 절차는 인권위원회의 절차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이 등록되면, 위원회는 진정의 심리적격과 본안에 대한 심사를 동시에 할 것으로 보인다. 진정의 대상이 되는 당사국은 6개월 이내에 진정의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진술서들을 제출해야 한다. 진술서가 제출되면, 진정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술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진정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회원국들과 진정인들의 불필요한 노력을 안 해도 되도록 통상적 절차와는 다른 절차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회원국이 진정의 심리적격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진술서를 조기에 제출하면, 진정인에게 심리적격에 관한 진술서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하도록 한다. 그 다음 위원회는 심리적격에 대해서만 예비결정을 내리고, 진정이 인정 가능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만 본안에 관한 단계에 들어간다. 이 경우, 당사국은 진정의 본안에 관한 진술서를 심리적격 결정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주어진 시한 내에 제출하면 되며, 진정인도 진술서가 도착하면 주어진 기간 내에 본안에 관한 진술서에 대해 반론을 제기 하도록 요청 받는다. 통상적 절차가 아닌 이러한 특별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통보된다.

### 긴급한 특수상황

선택의정서 5조에 의거하여 (위원회 진정 절차 규칙 63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할 수 있다.

### 심리적격에 관한 유의사항

심리적격에 관한 요건은 다른 조약기구들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인정불가능성의 사유는 선택의정서 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기에 설명한 일반적 관례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이 일반적 관례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고문방지위원회의 경우처럼, 다른 국제 조사 또는 조정 절차의 결정을 받은 진정은 인정불가능하다. 둘째, 위원회는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다시 말해, 정당화될 수 없음이 확실한 진정은 조기에 기각할 수 있다.

### 진정의 심사

진정의 심사에서 일반적 설명과 다른 유의할 점이 한가지 있다. 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을 통해 진정의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문서들을 유엔 또는 기타 기구들로부터 입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적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양 당사자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아직 미정) 그러한 문서 또는 정보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 할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 위원회의 결정 이후 - 일부 추가 정보

일반적 설명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선택의정서는 자체적으로 규약이 정하는 권리의 침해가 있었다고 결정한 진정들에 대해서 특별한 절차를 규정한다. 우선, 위원회가 진정의 본안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공식적으로는 소견 (Views)),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의 경우처럼, 권고를 한다는 점이다. 선택의정서 7조에 규정된 후속 절차에 따라서, 당사국은 위원회의 결정과 권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권고에 의거하여 취한 조치들에 관한 세부정보를 담은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회원국에 협약이 정하는 권리들의 전반적인 준수 상황에 관한 추가 정보를 직접 또는 차기에 위원회에 제출할 정기 보고서를 통해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진정 절차

#### 서문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은 1990년 12월 18일 채택되었으며, 회원국들에게 이주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의 포괄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할 의무를 부과한다. 실질적 의무는 협약의 2편부터 6편까지 걸쳐 있는 7조부터 71조까지의 조항들에 규정되어 있다. 협약에는 자체적인 진정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원하는 회원국들은 77조에 의거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위원회 10인의 독립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연례 회의를 갖는다 가 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를 자국에 의해 침해 당했음을 주

장하는 개인 또는 개인들의 집단이 제출하는 진정을 심사할 권한이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sup>13)</sup> 진정 절차가 발효하는 데 필요한 10개 회원국이 77조에 의거한 선언을 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협약의 진정 절차가 아직 가동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는 개별 진정에 대한 절차 규칙과 관례를 아직 정립해 놓지 못했다. 그러나 다른 조약기구들이 적용하는 절차들과 유사한 절차가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77조에 규정된 심리적격 요소들도 유사하게 해석할 것으로 보인다.

77조에 의거해서 선언을 한 회원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개인들은 (또는 그들을 대리하는 자들) 협약이 정한 개인의 권리들을 당사국이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진정이 익명으로 제출되는 경우, 진정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의 남용인 경우, 협약의 조항들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진정의 심리적격이 부인된다. 또, 다른 국제 조사 또는 조정 절차의 심사를 받았던, 또는 받고 있는 동일한 진정을 본 위원회에 다시 제출한 경우에도 심리적격이 부인된다. 다른 진정 절차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 구제조치 신청이 불합리하게 지연되고 있거나, 효과적인 구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국내 구제조치를 시도했어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국은 진정의 심리적격과 본안에 관한 진술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진술서가 제출되면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진정진정을 심사하고, 소견을 당사국과 진정인에게 전달한다.

13) 모든 이주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보호에 관한 위원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인권해설집 시리즈의 인권해설집 24를 참조할 것.

조약기구들에 직접 진정서를 전달하는 경우

인권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려면, 다음의 주소로 서신과 문의를 보낼 것.

우편	Petitions Team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1211 Geneva 10, Switzerland
팩스	+ 41 22 9179022 (특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메일	tb-petitions.hchr@unog.ch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려면 다음의 주소로 서신과 문의를 보낼 것.

우편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ited Nations Secretariat 2 United Nations Plaza DC-2/12th Floor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팩스	+ 1-212-963-3463

## 2부 : 유엔인권위원회 및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의 진정 절차들

### 유엔인권위원회 1503 절차

#### 서문

유엔인권위원회의 진정 절차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안의 번호를 따서 1503 절차라고 불리고 있으며<sup>14)</sup>, 유엔 체계 내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인권 진정 절차이다. 이 절차에 따라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정치적 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는 개인들의 진정보다는 국가의 인권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sup>15)</sup>

경제사회이사회는 이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당사국 정부들과의 대화를 촉진하며, 유엔인권위원회<sup>16)</sup> 에서 진정의 최종 단계에서 보다 의미 있는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0년 이 절차를 대폭 수정했다. 이 수정된 절차가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정 1503 절차이다.

#### 1503 절차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1503 절차에 의거하여, 유엔인권위원회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발생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전면적인 그리고 신빙성 있는 침해 행

14) 1970년 5월 27일자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503 (XLVII).

15) 유엔인권위원회는 그 밖의 수많은 진정 절차들의 기초이며, 특정국가의 인권 상황과 주제별 인권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인권위가 임명하는 특별보고자들도 이에 포함된다.

16) 2000년 6월 16일자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3/3.

위의 지속적인 패턴을 조사할 책무를 진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피해 자임을 주장하는 모든 개인 또는 집단은 유엔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 직접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도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 비정부기구가 진정을 제출하는 때에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인정된 인권 원칙들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또, 진정을 제출하는 상황에 관한 신빙성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1503 절차에는 어떠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우선, 진정은 익명으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진정서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또는 유엔으로 제출해야 하며, 1503 절차에 따른 처리를 희망한다는 뜻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의 목적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들도 밝혀야 한다. 이 자료는 일반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sup>17)</sup>

모든 진정은 가능한 한 자세하게 피해자의 성명, 날짜, 장소, 기타 증거 등의 관련 사실들을 기술해야 한다. 이 절차는 개인의 인권침해보다는 인권침해의 패턴을 조사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이므로, 단순히 한 사건에 관한 정보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가능하면 어떠한 집단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일련의 유사한 진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중매체의 보도에 의존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요컨대, 제출된 증거자

17) 이메일 주소에 진정인의 성명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메시지 속에 명시해야 한다.

료를 통해 전면적인 인권침해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 심리적격의 기준

진정의 심리적격을 인정 받으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에 미달하면 진정은 기각된다.

진정은 당사국 내에서의 진정 절차를 완료한 후 합당한 시일 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그러한 진정 절차들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진정서에는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유엔체계 내의 다른 절차들과 중복되는 진정과 그러한 절차들에 의해 이미 심사를 받은 진정을 다시 제출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진정도 정치적 동기를 가지거나, 유엔원칙에 배치되어서는 안 된다.

### 1503 절차의 운영 방식은?

진정은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다. 아래에 기술하는 초기 심사과정을 통과한 진정은 매년 한 차례 회의를 갖는 공식적인 1503 절차 구에 의해 심사된다.

#### 1단계: 최초심사 (진정에 대한 실무그룹 위원장과 사무국)

사무국은 진정서가 제출될 때마다 심사를 한다. 사무국은 소위 진정에 관한 실무그룹의 의장과 공동으로 명백하게 근거가 부족한 진정을 기각 시킨다 (2단계 참조). 진정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 심리적격이 승인되고, 당사국 정부에게 전달된다. 당사국 정부의 진술은

비밀에 부쳐지고, 진정인 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 2단계: 진정에 관한 실무그룹

늦여름 (보통 8월)에<sup>18)</sup>, 진정에 관한 실무 그룹은 회의를 갖고 지난해 최초심사단계를 통과되고, 실무그룹 회의가 열리기 최소 12주 전에, 당사국에 전달된 진정들을 평가한다. 진정에 관한 실무그룹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침해의 징후인 것으로 판단되는 진정서들과 당사국 정부들이 제출한 모든 진술서들을 검토한 다음, 인권 상황에 관한 실무그룹 (Working Group on Situations)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실무그룹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소 위원회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실무그룹은 당사국 정부의 진술서 또는 추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또는 다른 이유로 진정에 대한 심사를 연기시킬 수 있다.

실무그룹의 심사절차는 비밀에 부쳐진다. 심사는 서면 자료만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 대표나 진정인은 출석할 필요가 없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대다수 진정들이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무그룹의 결정은 각국 정부들에 권고 되지만, 진정인에게는 통보되지 않는다.

#### 3단계: 인권 상황에 관한 실무그룹

다음해 초 (보통 2월), 인권 상황에 관한 실무그룹은 진정에 관한 실무그룹이 인계한 상황들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갖는다.<sup>19)</sup> 또, 유

18) 인권의 증진과 보호에 관한 분과위원회 연례회의가 종료되는 즉시 진정에 관한 실무그룹 회의가 2주 동안 개최된다.

19) 인권 상황에 관한 실무그룹은 인권위원회의 연례회의가 열리기 최소 1개월 전에 1주일 동안 개최된다.

유엔인권위원회가 이전 회기부터 다루어 오던 모든 인권 상황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다 (다음 단계 참조). 실무그룹은, 이전 단계들에서 넘어 온 모든 자료들을 근거로, 자신에게 인계된 인권 상황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전면적인 침해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결정한다. 이 실무그룹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지리적으로 균등한 구성을 위해 유엔인권위원회 내의 지역별 국가 집단들에 의해 지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권 상황에 관한 실무그룹은 진정이 제출된 인권 상황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들을 가진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인권 상황을 보고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실무그룹은 구체적인 조치를 권고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는, 문제되는 인권 상황을 유보 시키거나, 진정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

진정에 관한 실무그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권 상황에 관한 실무그룹의 절차도 비밀에 부쳐지며, 서면 자료에 의해서만 심사되기 때문에 당사국 대표나 진정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된 모든 권고안을 포함하는 실무그룹의 결정은 당사국 정부들에게 권고 되지만, 진정인에게는 통보 되지 않는다.

4단계: 유엔인권위원회

전 단계가 종료된 지 약 한 달 후 (보통 3월), 유엔인권위원회가 비공개 회의에서 인권 상황에 관한 실무그룹이 회부한 인권 상황들을 심사한다. 당사국 정부 대표들이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질문에 답변을 한다. 그 직후 열리는 회의에서, 유엔인권위가 최종결정을 심의하는데, 이 또한 비공개로 진행된다. 당사국 대표들도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유엔인권위는 자신에게 회부된 인권 상황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다양한 옵션들을 갖는다. 제출된 모든 정보를 근거로 상황을 검토할 수도 있고, 상황을 검토하고 독립전문가를 임명할 수도 있다. 또는, 1503 절차에 의한 심사를 중단하고, 대신 공개절차<sup>20)</sup> 하에서 심의를 할 수도 있다. 또는 더 이상 심사를 진행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진정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 또, 모 기구인 경제사회이사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

인권위가 회부된 상황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 의장은 1503 절차에 의거하여 심사 받은 국가들과 심사가 종료된 국가들을 공개 회의에서 발표한다.

1503 절차의 비밀 준수

진정을 제출할 때는 성명을 밝혀야 하지만, 진정인은 진정서가 당사국 정부에 전달될 때는 자신의 성명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과 정부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 그리고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내려진 결정들은 비밀에 부쳐지며, 공표되지 않는다. 이는 경제사회이사회가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또는 당사국 정부가 문서의 공표를 원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는 한 심사가 중단된 인권 상황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비밀준수의 규칙들은 진정을 다루는 유엔기구들에게는 구속력이 있지만, 진정인이 1503 절차에 의거한 진정을 제출했음을 공개하는 것은 자유이다.

20) 공식적 절차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1235 (XLII)에 기술되어 있다.

### 1503의 장점과 잠재적인 단점

본 인권해설집에 설명된 다른 모든 절차들과 마찬가지로, 1503 절차도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진정인은 어떤 절차에 진정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심사 숙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1503 절차의 장점은 당사국이 특정한 조약을 승인했는지 또는 조약에서 정하는 의무를 제한했는지를 확인할 필요 없이 모든 국가에 대해서 진정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면, 후일 추가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응할 필요가 없다. 최초 제출한 진정서로 족하다. 1503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진정은 유엔인권기구의 최상위 기구인 유엔인권위원회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 으로서는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는 법률, 정책, 또는 관행을 수정하라는 강력한 압력을 받게 된다. 이 절차의 단점은 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내려지는 결정들과 그러한 결정들의 이유를 통보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또 진정에 대한 당사국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도 통보를 받지 못한다.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절차가 장기간 연장될 수 있으며, 1부에서 기술한 다른 절차들과는 달리, 긴급한 보호 조치에 관한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 1503 절차에 진정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절차에 의거한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다음의 주소로 서신과 문의를 보내야 한다.

우편	Commission/Sub-Commission Team (1503 Procedure) Support Services Branch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1211 Geneva 10, Switzerland
팩스	+ 41 22 9179011
이메일	1503.hchr@unog.ch

###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 진정 절차

1503 절차는 특정 국가들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면적인 인권침해를 폭로하기 위한 것인 반면,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의 비밀진정 절차는 여성의 권리에 관한 전세계적인 추세와 양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이 진정 절차는 경제사회이사회의 일련의 결의안들에 의거하여 마련되었으며, 위원회는 이 절차에 따라 여성의 지위에 관한 공개 및 비공개 진정서들을 심사한다.<sup>21)</sup> 150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진정 절차의 일차적인 목적은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 절차

위원회 사무국은 매년 개인과 단체들로부터 진정을 접수한다. 위원회는 진정접수를 통보하고 진정인에게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한다. 그 다음 진정서를 요약해서 당사국에 보내어 진술을 받는다. 그러나 진

21)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76(V)-1947년 8월 5일자, 304 I (XI) - 1950년 7월 14일, 17일자, 1983/27- 1983년 5월 26일자, 1992/19 - 1992년 7월 30일자, 1993/11 - 1993년 7월 27일자.

정인의 신원은 진정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득한 경우에만 당사국 정부에게 (결과적으로 위원회에) 알린다.

진정서는 그 다음에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정에 관한 실무그룹의 심사를 받는다. 이 실무그룹은 모든 지리적 지역을 대표하도록 구성되며, 위원회의 연례회의 (보통 봄) 중에 회의를 갖는다. 실무그룹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여성차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로 보이는 모든 진정서들과 정부의 진술서들을 심사한 다음 위원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위원회에 가장 빈번하게 진정이 제출되는 부문들을 지적한다. 개인 진정인들 에게는 정부의 진술서 또는 실무그룹의 보고서가 제공되지 않는다.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는 실무그룹의 보고서를 비공개 회의에서 심사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경제사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정의 최근 추세와 양상에 대해서 경제사회이사회가 취할 조치를 권고한다. 위원회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

여성의 지위에 관한 위원회의 진정 절차에 진정서를 제출하려면?

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하려면, 다음의 주소로 서신과 문의사항을 보내야 한다.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o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이 부서의 나머지 연락처는 상기 1부의 마지막 부분에 제공되어 있다)

## |부록 I|

### 진정서 표준 서식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고문방지협약, 또는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상기의 국제규약들 중에서 발동하려는 절차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

날짜:.....

#### I. 작성자에 관한 정보:

성 : .....

이름: .....

국적: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본 진정사건에 관련하여 서신 수취 주소: .....

.....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자 본인일 경우: .....

다른 사람을 대리하는 경우: .....

[대리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리 당사자에 대한 아래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성 : .....

이름: .....

국적: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주소 또는 현재 거주지: .....

당사자가 귀하의 대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 사실에 동의했다면, 당사자가 귀하에게 이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권한을 위임했다는 증거를 설명하십시오. ....

.....

.....

.....

또는

그러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작성자와 당사자의 관계의 성격을 설명하시고.....

.....

당사자를 대리하여 작성자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상술하십시오: .....

.....

II. 당사국/ 위반 조항

선택의정서 회원국 (유엔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경우) 또는 관련 선언을 한 국가 (고문방지위원회 또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하는 경우)의 이름: .....

위반한 혐의가 있는 규약 또는 협약의 조항들:

.....

III. 모든 국내 구제절차의 시도/그 밖의 국제적인 구제절차에 한 진정

당사국 내에서 주장하는 인권침해를 구제 받기 위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취했거나 그러한 자를 대리해서 취한 조치들 법원과 그 밖의 관계기관에의 제소를 비롯해서 어떠한 구제절차를 밟았으며, 어떠한 주장을 했고, 시기와 결과에 대해 상술하십시오.

.....

.....

구제신청을 해도 부당하게 절차가 연기되거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로, 또는 작성자에게 구제신청이 허용되지 않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이러한 구제절차들을 모두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진술하십시오.

.....  
.....

작성자는 다른 국제기구에 이 사건의 조사를 신청한 바 있습니까 (범아메리카 인권위원회, 유럽인권법원, 또는 인간과 인민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위원회 등)?

.....  
.....

만일 그러한 적이 있다면, 신청을 했거나, 진행 중인 구제절차(들), 구제신청 내용, 시점, 결과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십시오:

.....  
.....

IV. 진정내용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인권침해 사실과 환경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십시오. 작성자가 진정하는 특정 사건에 대한 평가 또는 심리에 포함되어야 할 모든 사실들을 진술하십시오. 작성자가 진술하는 사실

과 환경이 어떻게 작성자의 권리를 침해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  
.....

작성자 서명: .....

[이 진정서 표준 서식의 여러 항목 다음에 있는 빈칸에 답변을 써 넣으시오. 공간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용하십시오.]

V. 부속서류 체크리스트 (원본이 아닌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할 것):

대리권에 관한 문서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권한위임에 관한 문서가 없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서는 정당화 할 수 없는 경우):

작성자의 주장에 대한 국내 법원과 관계 당국의 결정 (관련 법률의 사본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음): .....

.....

다른 국제 조사 및 화해 절차에의 진정 및 그 절차에 의한 결정:

.....

●  
절에서 진술한 사실과/또는 그 사실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작성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문서 또는 작성자가 보유하고 있는 그 밖의 확증적 증거:

.....

이 정보를 첨부하지 않거나, 작성자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입수해야 할 경우, 또는 첨부된 문서가 사무국에서 통용되는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성자의 진정서 심리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록 II|

### 진정 지침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제출할 진정서

#### 1. 진정서 작성자에 관한 정보

- 성
- 이름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국적/시민권
- 여권/신분증 번호 (있는 경우)
- 성별 ●
- 결혼 여부/자녀
- 직업 ●
- 민족적 배경, 종교, 사회단체 (해당되는 경우)
- 현주소 ●
- 
-

- 비밀 서한 수취주소 (현주소와 다른 경우)
- 팩스/전화/이메일
- 진정서를 제출하는 귀하의 자격이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 해당하는지 밝히시오.

-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본인. 피해자가 2인 이상의 집단인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십시오.
- 피해자의 대리인.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증거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십시오.

2.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 (작성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 성
- 이름
- 생년월일 및 출생지
- 국적/시민권
- 여권/신분증 번호 (있는 경우)
- 성별
- 결혼 여부/자녀
- 직업
- 민족적 배경, 종교, 사회단체 (해당되는 경우)
- 현주소
- 비밀 서한을 수취할 수 있는 우편주소 (현주소와 다른 경우)
- 팩스/전화/이메일
- 
- 

3. 당사국에 관한 정보

- 당사국의 국가명

4. 인권침해의 성격

작성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를 제출하십시오.

인권침해 행위(들)와 가해자(들)에 관한 진술

날짜(들)

장소(들)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의 조항들. 진정서가 1개 조항 이상을 언급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진술할 것.

5. 국내 구제절차를 위해 취한 조치들

국내 구제절차를 모두 시도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을 진술하십시오. (예: 법적, 행정적, 입법적, 정책 또는 프로그램 구체책을 받기 위한 시도)

시도한 구제절차의 유형(들)

날짜(들)

장소(들)

조치를 취한 자

진정한 당국 또는 기구

사건을 심문한 법원의 명칭 (있을 경우).

모든 국내 구제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진술

- 
-

하십시오.

주의: 모든 관련 문서들의 사본을 첨부할 것.  
※

6. 다른 국제 구제절차

동일한 사건이 다른 국제조사 또는 화해절차 하에서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를 받고 있으면, 그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절차의 유형

- 날짜(들)
- 장소(들)
- 결과 (있는 경우)

주의: 모든 관련 문서들의 사본을 동봉할 것.

※

7. 날짜 및 서명

날짜/장소: .....

작성자(들) 및 피해자(들)의 서명: .....

8. 첨부서류 목록 (원본은 보내지 말고, 사본만 보낼 것)

인권 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 목록

- No. 1 인권기구 (Human rights machinery)
- No. 2 국제인권장전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1차개정판)
- No. 3 인권분야의 자문 및 기술적 협력 (Advisory services and technic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1차개정판)
- No. 4 고문방지 (Combating torture) (1차개정판)
- No. 5 인종주의 및 인종차별철폐 투쟁에 대한 제2차 10개년 행동계획 (Programme of action for the second decade to combat racism and racial discrimination)
- No. 6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2차개정판)
- No. 7 진정 절차 (Complaint Procedures)
- No. 8 인권을 위한 세계 공보 캠페인 (World public information campaign for human rights)
- No. 9 원주민의 권리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1차개정판)
- No. 10 아동의 권리 (The Rights of the Child) (1차개정판)
- No. 11 초법적, 약식 및 자의적 처형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1차개정판)
- No. 1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 No. 13 인도주의법과 인권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 No. 14 동시대적 형태의 노예제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 No. 15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인권이사회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Human Rights Committee)

- No. 16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The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차개정판)
- No. 17 고문방지위원회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 No. 18 소수집단의 권리 (Minority Rights) (1차개정판)
- No. 19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No. 20 인권과 난민 (Human Rights and Refugees)
- No. 21 적절한 주거를 가질 권리 (The Human Right to Adequate Housing)
- No. 22 여성차별: 여성차별철폐협약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convention and the Committee)
- No. 23 여성 및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해로운 전통적 관행 (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Affecting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 No. 24 이주노동자의 권리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 No. 25 강제퇴거와 인권 (Forced Evictions and Human Rights)
- No. 26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 No. 27 유엔 특별보고관 관련 17가지 FAQ (Seventeen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s)
- No. 28 용병활동이 국민의 자결권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Mercenary Activities on the Right of Peoples to Self-Determination)
- No. 29 인권운동가: 인권 옹호활동을 위한 권리의 보호 (Human Rights Defenders: Protecting the Right to Defend Human Rights)

"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은 제네바에 주재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제작하였다. 동 책자는 활발하게 고려되고 있거나 특별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선별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인권해설집(Human Rights Fact Sheet)"은 많은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 인권이 어떠한 것이고, 유엔이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권의 실현을 위하여 사용가능한 국제적 제도(international machinery)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의도로 제작되었다. 내용 변경이 없고, 제네바 주재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과 재발행 기관이 협의하고 크레딧(credit)을 얻는다는 조건하에 유엔 공식 언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재발행이 가능하다.

문의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Office at Geneva  
8-14, avenue de la Paix  
1211 Geneva 10, Switzerland

뉴욕사무소(New York Offic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United Nations  
New York, NY 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유엔인권해설집  
「진정 절차」

|인쇄일| 2005년 11월 일  
|발행일| 2005년 11월 일  
|발행처|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  
|주 소|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16번지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02 2125 9660~5  
|F A X| 02 2125 9666  
|인쇄처| 도서출판 한학문화(02)313-7593(代)

ISBN: 89-90475-71-6 94300 비매품  
89-90475-51-1(세트)